

농촌진흥법 개정방향

이 민

농촌진흥청

Directions for Revision of Rural Development Law

Min Le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mmary

This study aimed at exploring new directions for revision of the Rural Development Law.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technologies and localization of the extension offices and staffs were some of the important challenges to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Korea.

The study suggested new directions for revision of the Rural Development Law should consider new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cerns of agricultural sciences, and needs of farmers,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Some of major focus of the revised Rural Development Law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1) Rural development programs should cover extended areas of newly developed concerns and target groups, 2) County and city administration should provide proper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local agricultural extension center. 3) Areas for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should be extended to meet the needs of newly developed technologies and sustainable environment system at local level, 4)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extension efforts should be performed annually to support financially and to strengthen proper systematic linkage between national and local extension services.

I. 序

1. 농촌진흥법 개정논의의 意義

법이란 정책을 담은 그릇이다. 농촌진흥법은 농업과학기술개발 및 지원체계의 틀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우리 나라의 농업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국가정책이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 구현체인 법 역시 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최근의 경제위기,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일련의 개혁조치 등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일대 변혁을 맞이하였다. 농업과학기술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요청에 직면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환경변화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스템 변화의 요청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법이라는 정책의지로 어떻게 집약해 나아갈 것인지를 고찰하는 데에 농촌진흥법 개정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농촌진흥법의 개요

1) 제정 목적

농촌진흥법은 제1조에서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농업과학기술의 개발·보급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수행의 근거법으로 기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2) 연 혁

농촌진흥법은 1962년 3월 21일 법률 제1039호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로 제정·공포되어 동년 4월 1일 시행되었다. 이 법 시행과 동

시에 1957년 제정된 농사교도법은 폐지되었다. 제정 당시에는 농촌지도사업 추진체계를 농촌진흥기관으로 단일화하고,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도·시·군에 설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전문 11조, 부칙 3항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1973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인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설치의무조항이 삭제되는 등 6차에 걸친 부분개정이 있었으며,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5020호로 전문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행 농촌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설치근거(임의규정)를 신설하고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여 전문 17조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법령개정과 그에 따른 농촌진흥조직 및 농촌진흥공무원의 신분변화는 <표 1> 과 같다.

<표 1> 농촌진흥사업관련법, 조직 및 신분 변화

법 률	조 직	신 분
○ 농사교도법 (‘57.2.12)	○ 농사원-도농사원-시·군농사교도소	○ 국가직
○ 농사연구교도법 (‘61.10.2)	○ 농사원 ○ 도농사원 ○ 시·군농사교도소	○ 국가직
○ 농촌진흥법 (‘62.3.21)	○ 농촌진흥청 ○ 도농촌진흥원 ○ 시·군농촌지도소	○ 국가직
○ 농촌진흥법 (‘73.1.15)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촌진흥법의 지방농촌진흥기관 설치근거를 삭제함	○ 국가직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1.1.)		○ 국가직 179명 (도원 과장급 이상 및 주무연구사)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8.31)		○ 국가직 27명 (도원 국장급 이상)

II. 개정의 배경

1. 지방농촌진흥사업 수행체계 재정립의 요청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지방의 농촌진흥사업 수행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방농촌진흥조직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으로 그 위상이 바뀌게 되었으며, 199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직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관계의 구축이 농촌진흥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방화 이후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중적 관할구조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로 이어지는 업무흐름이 과거와 같은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지방농촌진흥사업의 성패는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단체장의 자의적인 운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각도에서 고찰하면, 지방자치의 본질은 이러한 측면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지방농촌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체장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역기능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 분산된 농촌진흥사업 주체간에 발생이 예견되는 비협력적 관계는 중복투자나 단기적·일회성 사업수행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의 단절과 자치단체의 일반행정조직과의 화학적 융합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나타난 주요 변화양상을 요약하였다.

〈표 2〉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변화양상

순 기능	역 기능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전국적 규모의 농촌진흥사업추진 곤란
예산 운용의 신속성 증대	단기성 위주의 사업 수행
관료적 통제 약화	중앙과의 연계성 약화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사업 수행	인사상의 불만으로 인한 사기저하

결론적으로 지역농업의 균형적 발전,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농업정보의 적기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농촌진흥사업 추진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농업과학기술개발 및 지원방향의 전환

농촌진흥법의 개정은 21세기를 지향한 농촌진흥청의 위상정립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표 3〉 21세기 농업패러다임의 변화

기존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중산위주의 농업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보전형 농업)
노동집약적 농업	자본기술집약적 농업
자급자족적 생산농가	전업농 및 기업농
내수시장지향형 농업	수출지향형 농업

1) 도지사는 예산, 인사, 감사, 조직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반면, 농촌진흥청장은 원장 및 국장에 대한 임명권만을 가지게 됨으로서 농업기술원과 도청의 관계는 종전에 비해 심화되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최대화두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있다. 대량생산 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한정된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는 동시에 생산량의 감소는 최소화하는 것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린라운드로 집약되는 선진국들의 농업생산규제 움직임이나 소비자들의 안전농산물의 욕구증대로 미루어 볼 때, 친환경 농업은 새로이 각광받는 분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건상 경지면적의 축소 및 농업인구의 감소로 인한 농업기반 축소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적은 농토와 노동력으로 더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의 수요는 급증하게 될 것이다. 방법론

적 측면의 변화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기술의 개발 및 지원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 경영기법 등 인접학문과의 교차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그 영역도 굳이 생산에 국한되지 않고 품종개발에서 가공·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으로 넓어지게 될 것이다. 농업과학기술 지원의 영역에 있어서도 다방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소농, 농업인 위주의 기술지원은 전업농, 도시민 등을 포함한 전방위 기술지원으로 대상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도 생산기술위주에서 농업경영, 생활개선, 환경보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기술지원의 방법 역시 기존의 교육, 시범 중심에서 PC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과 접합된 새로

〈표 4〉 농촌진흥법과 지방농촌진흥법의 조문비교

농 촌 진 흥 법	지 방 농 촌 진 흥 법 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사업의 정의)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제3조(지방농촌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제4조(지방농촌진흥사업계획의 내용)
제5조(공동연구개발)	제5조(지방농촌진흥사업의 시행)
제6조(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제6조(지방농촌진흥사업의 평가)
제7조(교육훈련의 실시)	제7조(지방농촌진흥기관의 설치)
제8조(지원사업등의 건의)	제8조(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의 임무)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제9조(농업기술센터의 지구지소 설치)
제10조(연구·지도직공무원)	제10조(지방농촌진흥기관의 조직)
제11조(연구·지도공무원의 자격등)	제11조(전문인력의 적정배치)
제12조(연구·지도공무원의 복무)	제12조(농업기술센터의 시설)
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제13조(비용의 보조)
제14조(연구개발성과의 이전)	제14조(보고서)
제15조(농업산·학협동사업의 추진)	
제16조(농업산·학협동사업의 지원)	
제17조(권한의 위임)	

운 방법으로 대체되는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어디서든 농촌진흥청 또는 농업관련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가능해 졌으며 신속한 기술지원이 가능해 졌다. 요약하면, 기술지원사업 역시 최근 유행처럼 일고 있는 지식경영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농업 분야와 지식경영기법을 어떻게 융화시켜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기술지원사업의 성패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3. 행정환경의 변화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 발전을 국정목표로 하여 출범하였다. 행정영역에서도 이 두가지 과제를 축으로 한 환경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규제개혁이나 행정절차법 등의 입법을 통해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성과급제도,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을 통해 성과지향적 정부의 구축을 시도한 것이 그 예이다. 이처럼 공행정의 영역에도 경영원리 및 기법의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행정영역에서의 비능률 제거에 목적이 있다. 이같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객관화된 평가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이며, 앞으로 사후 감사의 차원에서 벗어난 실적 평가제의 중요성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Ⅲ. 개정의 선결 검토과제

1. 논의의 개요

지방농촌진흥사업의 안정적 수행환경 구축이 이번 농촌진흥법 개정의 주요 과제의 하나임은 주지한 바와 같다. 그런데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현행 농촌진흥법의 개정으로는 부족하며 별도의 단행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이 문제는 농촌진흥법 개정을 위하여 개최된 개정추진단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으며, 농촌진흥법의 개정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검토과제라 할 수 있다.

2. (가칭) 지방농촌진흥법 제정 검토

지방농촌진흥법을 제정하는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지방기관의 설치의무조항이나 업무분장뿐 아니라 지방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일괄적으로 규정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지역보전법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특정분야 사업에 대한 일종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방농촌진흥법의 제정은 몇가지 검토해야 할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지방농촌진흥법과 현행 농촌진흥법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방농촌진흥법을 제정한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²⁾ 지방농촌진흥법의 입법을 추진할 경우 농촌진흥법은 중복입법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관련조문의 삭제 및 축소개정이 불가피하다. 현행 농촌진흥법 제3조, 제4조, 제7조 내지 제9조 등 지방관련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조문들 중에서도 제12조와 같은 조항은 실제로는 지방직 공무원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삭제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전문 17조의 농촌진흥법은 10개 조항 정도로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그중 목적조항, 정의조항, 위임조항을 제외할 경우 실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은 7~8개 조항만이 남게 된다. 결국 농촌진흥사업이라는 단일사업을 규정하는 사업법으로서의 위상은 위태롭게 될 수밖에 없다.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농촌진흥법의 축소개

정과 지방농촌진흥법의 제정이 모두 여의치 않을 경우를 고려해야만 한다.

둘째, 지방농촌진흥법의 성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조직만을 규율하는 법률³⁾이라면 사업에 대한 규정은 다른 사업법을 인용하면 될 것이나 '지방농촌진흥법'이란 제명을 쓰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농촌진흥사업 전반에 대한 근거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법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농촌진흥법에서 농촌진흥사업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지방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입법한다면 조직에 관한 사항만을 포함하는 조직법적 형태의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지방농촌진흥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이법이 동일한 사업에 대해 중앙과 지방을 분리하여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지원사업을 분리하여 규정하고자 한

것인지⁴⁾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3. (가칭) 지방농촌진흥기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 법률 제정 검토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은 지방농촌진흥법 제정에 따르는 어려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의 입법례로는 보건환경연구원법,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등이 있다.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형태의 입법은 법체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법과 소방기관설치에 관한규정의 예와 같이 농촌진흥법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관한 법률⁵⁾을 양립시켜 사업과 조직을 각각 관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5〉 개정안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조문비교

농촌진흥법 개정안	지방농촌진흥기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제2장 지방농촌진흥기관 제4조(지방농촌진흥기관의 설치) 제5조(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임무) 제6조(전문인력등의 적정배치)	제1조(목적) 제2조(설치) 제3조(시험연구기관등의 설치) 제4조(업무) 제5조(전문인력의 적정배치) 제6조(시설이용) 제7조(수수료등) 제8조(지도) 제9조(폐지)

- 2) 아래의 지방농촌진흥법 조문목차는 농촌진흥법 개정추진단 회의시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 3) 이를테면 '농업기술원법'·'농업기술센터법' 이나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제명을 갖는 법률이 될 것이다.
- 4) 사업별로 분리·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면 '농촌진흥법'과 '지방농촌진흥법' 보다는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법률', '기술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5) 이는 법률이 될 수도 있으나, 대통령령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가 '대통령령 내지 대통령령의 기준'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비단 조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만 제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과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의 협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조직에 관한 사항을 완전히 분리하여 별개의 법안을 제정하는 경우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규정을 보강·개정하는 경우 중 어느 편이 협의에 유리한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조문 구성상 법률안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이다. 제2조에서는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의 설치를, 제3조에서 시험연구기관 및 지소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제4조 및 제5조에서 업무와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기타 조항들은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부차적이라 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기대효과의 측면에서는 현행 농촌진흥법을 <표5> 와 같이 개정하는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진다.

4. 小 結

농촌진흥법이 지방농촌진흥기관과 관련된 조항들을 상세히 규정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법체계의 측면에서도 조직, 인사 등이 혼재됨으로 인한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농촌진흥법의 개정을 우선 추진함이 유리하다고 보여진다.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든, 농촌진흥법을 개정하든, 논의의 핵심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조직 및 인력배치의 안정화에 있다. 법안에 포함될 내용으로 미뤄볼 때, 중요한 것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에 있는 것이지,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법에 포함되는가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다. 이같은 내용들이 별도의 법률이 아닌 농촌진흥법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유로 개정반대의견이 개진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되며, 이 점에 대해서는 법제처와 사전 논의를 한 바 있다. 법체계의 문제가 없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유사하다면 현실적으로 보다 추진이 용이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법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법률안의 제정은 기존 법안의 개정에 비해 시간 및 노력의 소모가 크다.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지방기관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경우 핵심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설치의무화, 전문인력의 배치 및 교류, 기관의 업무분장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지방에서의 농촌진흥사업과 관련된 신규 법률의 제정은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후 다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V. 주요 개정내용

농촌진흥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농촌진흥사업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농업과학기술개발 여건의 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하며, 행정환경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사업 수행방식을 조정함에 있다. 이같은 대원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효율적 연계방안의 모색, 농촌진흥사업의 영역 재조정, 평가제도 강화 및 경쟁원리의 도입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어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영역확장

- 제3조(사업의 범위)

농촌진흥법은 농촌진흥사업 및 그 하위의 연구개발사업, 기술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 제2조

현행	개정안
<p>제2조(사업의 정의) ①이 법에서 "시험연구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과학기술(축산업, 가축위생, 잠업, 버섯의 육종·재배, 농·축산물의 저장·이용 및 가공과 농기계·농약·비료등 농자재의 개량에 관한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농업생물산업을 위한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3. 주요우량작물·채소종자·누에씨, 뽕나무 묘목, 화훼종묘, 우량과수의 묘목, 유용미생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과 가축진염병예방약의 개발 및 생산 4.~6. (생략) <p>②이 법에서 "농촌지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 2.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등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3. 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 4. 제1항의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5.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및 보급 6. 농작물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7. 농작물의 품질 및 품위향상을 위한 지도 8.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p>③이 법에서 "교육훈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p>	<p>제3조(사업의 범위) ①이 법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농업(농작물생산업, 잠업, 축산업 및 가축위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농축산물 저장·가공·이용 및 이들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과학과 관련된 기초·첨단기술 및 실용화 기술의 시험연구개발 2. 농업환경에 관한 시험연구개발 3.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시험연구개발 4. 비료·농약 등 농자재, 종자 및 농기계에 관한 시험연구개발 5. 농업경영, 정보화 및 농촌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p>②이 법에서 "기술지원사업"이라 함은 농업, 농촌생활, 농업전문인력육성 및 이들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기술·정보와 시설·장비등을 지원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의 연구개발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시설·장비등의 지원 2. 지역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지원 3. 농업경영, 정보화기술 및 생활과학기술의 지원 4. 후계농업인등 농업인력의 육성 5. 병해충 예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원 <p>③이 법에서 "교육훈련사업"이라 함은 농업, 농촌생활, 농업인력 및 이들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관련 산업계·학계·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농업산·학협동"이라 한다)에 의한 농과계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영농기술교육훈련 3. 농업인·농촌청소년·농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4.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5. 전업농업인 및 농업인후계자 등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산·학협동사업에 참여하는 농과계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영농기술교육훈련 3. 농업관련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4. 농업인의 부업훈련 5. 농업인·농촌청소년·농촌여성에 대한 교육훈련 <p>④농촌진흥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사업의 정의)의 성격은 사업의 정의라기보다는 사업의 범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제2조에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으며, 현행법 제2조는 사업의 범위로 제명을 수정하여 전문개정 하였다.

현행법은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같은 형태의 조문구성은 구체성은 높으나 여건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사업 수행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신규사업수행을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절차까지 마쳐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정안에서는 사업의 범주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작목별 또는 사업별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슈로 등장하였거나 그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법률에서 언급하여 미래지향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연구개발사업의 친환경, 유전자원 분야, 기술지원사업의 생활개선 분야가 그 예가 될 것이다.

2. 지방농촌진흥사업의 안정적 수행환경구축

- 제2장 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화 이후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사업수행 환경이 불안정적임은 주지한 바와 같다. 지방조직의 경우 그 인사 및 조직과 관련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해당 자치단체의 소관이라 할 수 있지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주무관청의 관여 역시 필요하다. 보건소나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사업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자치단체의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기관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농촌진흥사업 수행과정에서의 협의 뿐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의 존폐문제에 있어서도 농촌진흥청과의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는 당해 기관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법적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이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현행	개정안
<p>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지방농촌진흥기관</p> <p>제4조(지방농촌진흥기관의 설치) ①도지사는 당해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개발을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 소속 하에 시험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p> <p>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당해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두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p> <p>③지방농촌진흥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사항 이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5조(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임무) ①지방농촌진흥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농촌진흥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을 기한다.</p> <p>②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전문인력의 적정배치등) ①지방농촌진흥기관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p> <p>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당해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간 전문인력등의 교류를 할 수 있다.</p> <p>③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전문인력등에 대하여 그 배치 및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p>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설치에 행정자치부 소관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같은 편제는 위법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농촌진흥기관과 법적 지위를 같이 하는 타 직속기관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데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⁶⁾

개정안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설치를 농촌진흥법에 의하도록 하여 농촌진흥법에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제5조 및 제6조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업무 및 인력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안은 제4조에서 지방조직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 제5조에서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영역을 규정하며 제6조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전문지도인력배치를 의무화하게 함으로서 안정적인 지방농촌진흥사업 수행 환경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3. 농촌진흥사업수행의 체계성 강화

- 제3장 농촌진흥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사업의 수행은 계획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농촌진흥사업 역시 각각의 사업별 계획을 수립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금번 개정에서는 계획의 명칭, 수립주기, 수립된 계획의 실시경로 등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 졌다.

연구개발사업계획은 5년주기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행령에 있던 것을 상위법으로 규정하게 하였다. 기술지원사업의 경우 법 제4조제5항에서는 농업과학기술보급기본계획을, 시행령 제3조에서는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을 매년 수립·시달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법률에서 기술지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정리하였다. 교육훈련사업은 현행법 제7조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 실시를 위한 실시계획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은 농업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기술지원사업과 교육훈련사업은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도록 하였던 것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여 농촌진흥사업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다시 사업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행 농촌진흥법에서는 계획관련사항이 제6조제2항, 제4조제4항, 제7조 등 각각의 항과 조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각각의 조로 통일하여 사업계획간 균형을 유지하였고, 개정안 제7조 내지 제10조를 제3장으로 하여 사업계획의 비중을 제고하였다.

6) 다른 법에 의하여 직속기관을 설치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기 관 명	근 거 법 령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법 및 동법 시행령
보건소,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소방서	소방법 및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현행	개정안
<p>제6조(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미리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7조(연구개발사업 종합계획) ①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개발사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 3.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투자계획 4.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사업 종합계획의 범위안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⑤농촌진흥청장은 매년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하여 농업과학기술보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과학기술보급기본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여야 한다.</p>	<p>제8조(기술지원사업 기본계획) 농촌진흥청장은 기술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기술지원 기본과제 및 중점과제 3. 기술지원사업 평가계획 4.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술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제7조(교육훈련의 실시) ①농촌진흥청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전문농업인력의 양성등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교육훈련사업 기본계획) 농촌진흥청장은 교육훈련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훈련사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분야별 교육훈련계획 3. 교육훈련사업 평가계획 4.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10조(실시계획) ①농촌진흥청장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시·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4.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 연계방안 모색

- 제14조 지방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및 지원
 중앙과 지방의 권한체계는 종래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변화하였다. 이로 인해 조직간 협력의 문제와 양자를 어떻게 연계시키는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조직간의 연계 수단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인사·조직·보조금·사전승인·조언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명령·강제보다는 자율적 통제를 선호하는 최근의 추세와 인사·조직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해진 현실을 감안한다면 보조금 등에 의한 사업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개정안에서는 농촌진흥사업의 수행결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평가를 통한 보조금의 차등지원 근거를 신설하였다.

현행	개정안
<p>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①국가는 농업과 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국가는 농촌진흥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학교·기타 단체 또는 개인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4조(지방농촌진흥사업의 평가) ①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및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p> <p>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필요한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p>

5. 기타 개정사항

이번 개정안에서는 앞서 언급한 사항이외에도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개선하였다.

먼저 지원시책건의의 대상을 농림부 장관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였다(안 제15조).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이나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기술지원사업 등 농림부 이외의 관계기관과의 협조(환경부 등)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예직의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년 퇴직한 연구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던 것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재직중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우수한 업적을 남긴 자'중 위촉하도록 하여 직종에 관계없이 유능한 전직공무원을 농촌진흥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18조), 농업산·학협동사업의 추진주체를 '농촌진흥청장'에서 '농촌진흥기관의 장'으로 하여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산·학협동사업의 추진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술실용화의 범위도 확장하였다(안 제23조). 종전에는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성과만을 이전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이 개발한 성과의 이전

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V. 結

이상에서 농촌진흥법의 개정논의의 의의 및 개정의 배경 그리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농촌진흥법은 명실상부한 우리 나라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의 근거법으로 기능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농촌진흥사업 수행환경은 급변하는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해 농촌진흥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진흥법 역시 그 같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개정안에 있어서 가장 크게 고려된 영역은 지방화이후의 농업기술지원사업 수행체제를 어떠한 형태로 정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설치근거를 보강하였으며,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문인력의 배치 및 관장업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외에도 농촌진흥법 개정안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영역을 확장하여 새로이 등장할 연구분야에 대비하였고, 기술실용화의 대상을 넓혔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사업평가를 통한 보조금의 차등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참고〉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산 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u>도모하기 위하여</u> <u>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 및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의 실시</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 ----- -----<u>도모하고 품요로운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을 구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u>----- -----</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2조(사업의 정의) ①이 법에서 "시험연구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과학기술(축산업, 가축위생, 잡업, 버섯의 육종·재배, 농·축산물의 저장·이용 및 가공과 농기계·농약·비료등 농자재의 개발에 관한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농업생산업을 위한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3. 주요우량작물·채소종자·누에씨, 뽕나무 묘목, 화훼종묘, 우량과수의 묘목, 유용미생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과 가축전염병예방약의 개발 및 생산 4. 농기계·농약·비료등 농자재의 표준규격의 설정 및 품질관리 5. 농업경영의 적정규모화·능률화 및 협업화와 농업과 관련된 법인등 농업생산조직체의 경영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6. 농촌생활 및 농촌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진흥사업"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 기술지원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말한다. 2. "농촌진흥기관"이라 함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제4조의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한다. 3. "농업산·학협동사업"이라 함은 농업과학기술의 진흥과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기관이 농업관련단체·연구기관·농과계 학교·기업·농업인등과 함께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p>제3조(사업의 범위) ①이 법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농업(농작물생산업, 잡업, 축산업 및 가축위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농축산물 저장·가공·이용 및 이들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과학과 관련된 기초·첨단기술 및 실용화 기술의 시험연구개발 2. 농업환경에 관한 시험연구개발 3.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시험연구개발 4. 비료·농약 등 농자재, 종자 및 농기계에 관한 시험연구개발 5. 농업경영, 정보화 및 농촌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현행	개정안
<p>②이 법에서 "농촌지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 2.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등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3. 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 4. 제1항의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5.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및 보급 6. 농작물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7. 농작물의 품질 및 품위향상을 위한 지도 8.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p>③이 법에서 "교육훈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관련 산업계·학계·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농업산·학협동"이라 한다)에 의한 농과계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영농기술교육훈련 3. 농업인·농촌청소년·농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4.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5. 전업농업인 및 농업인후계자 등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p>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p>	<p>②이 법에서 "기술지원사업"이라 함은 농업, 농촌생활, 농업전문인력육성 및 이들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기술·정보와 시설·장비등을 지원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의 연구개발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시설·장비등의 지원 2. 지역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지원 3. 농업경영, 정보화기술 및 생활과학기술의 지원 4. 후계농업인등 농업인력의 육성 5. 병해충 예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원 <p>③이 법에서 "교육훈련사업"이라 함은 농업, 농촌생활, 농업인력 및 이들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산·학협동사업에 참여하는 농과계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영농기술교육훈련 3. 농업관련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4. 농업인의 부업훈련 5. 농업인·농촌청소년·농촌여성에 대한 교육훈련 <p>④농촌진흥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지방농촌진흥기관</p> <p>제4조(지방농촌진흥기관의 설치) ①도지사는 당해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개발을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 소속하에 시험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신설></p> <p>제6조(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미리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당해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권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두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p> <p>③지방농촌진흥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사항 이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5조(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임무) ①지방농촌진흥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농촌진흥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을 기한다.</p> <p>②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전문인력의 적정배치등) ①지방농촌진흥기관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p> <p>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당해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간 전문인력등의 교류를 할 수 있다.</p> <p>③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전문인력등에 대하여 그 배치 및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p> <p>제3장 농촌진흥사업계획의 수립·시행</p> <p>제7조(연구개발사업 종합계획) ①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개발사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 3.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투자계획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	개정안
<p>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⑤농촌진흥청장은 매년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하여 농업과학기술보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과학기술보급기본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여야 한다.</p> <p>제7조(교육훈련의 실시) ①농촌진흥청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전문농업인력의 양성등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사업 종합계획의 범위안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기술지원사업 기본계획) 농촌진흥청장은 기술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기술지원 기본과제 및 중점과제 3. 기술지원사업 평가계획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제9조(교육훈련사업 기본계획) 농촌진흥청장은 교육훈련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훈련사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분야별 교육훈련계획 3. 교육훈련사업 평가계획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제10조(실시계획) ①농촌진흥청장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시·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u>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④농촌진흥청장은 시험연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시험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이 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조정하여 시험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 효율을 높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3. 연구인력의 양성·확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p>①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u>농촌지도사업</u>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u>농촌지도사업</u>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u>농촌지도사업</u>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p> <p><신 설></p> <p>⑥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의한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u>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②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u></p> <p>③제2항의 공공단체외의 단체가 <u>농촌지도사업</u>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시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농촌진흥사업의 실시</p> <p><u>제11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①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기관이 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조정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p>②----- ----- 기술지원사업 ----- 기술지원사업----- ----- 기술지원사업 -----.</p> <p>③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교육훈련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보등 교육훈련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u>제12조(공공단체등의 농촌진흥사업 실시)</u></p> <p>①-----농촌진흥사업----- -----농촌진흥기관----- -----협의----- -----.</p> <p>②제1항-----농촌진흥사업 ----- -----.</p>

현행	개정안
<p><u>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u> ①국가는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②국가는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p> <p><신설></p> <p><u>제8조(지원시책등의 건의)</u> ①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의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그에 대한 지원등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거나 농림부장관에게 지원시책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지원등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농림부장관에게 지원시책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책등에 대한 건의를 받은 농림부장관은 이에 대한 지원시책등을 강구하여 개발된 기술등이 농가에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u>제9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u>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u>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u> 국가는 농촌진흥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학교·기타 단체 또는 개인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p> <p><u>제14조(지방농촌진흥사업의 평가)</u> ①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및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p> <p>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필요한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p> <p><u>제15조(지원시책등의 건의)</u> ①-----연구개발사업-----평가하여-----</p> <p>-----기술지원사업-----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p> <p>②-----연구개발사업-----평가하여 기술지원사업-----</p> <p>-----기술지원사업-----</p> <p>-----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p> <p>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p> <p>-----지원----- (삭제)</p> <p><u>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의무)</u>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0조(연구·지도직공무원) ①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을 둔다. ②연구공무원은 시험연구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지도공무원은 농촌지도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정년으로 퇴직한 연구공무원으로서 그 재직중의 업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시험연구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11조(연구·지도공무원의 자격등) ②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수당·위촉방법 및 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연구·지도공무원의 복무)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이 법에 정한 사업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p>	<p>제17조(연구·지도직공무원)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기관에 연구직공무원(지방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도직공무원(지방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p> <p>제18조(명예직의 위촉) ①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 재직중 농촌진흥사업수행에 우수한 업적을 남긴 자 -----농촌진흥사업----- ②제1항----- -----자격등-----</p> <p>제19조(연구·지도직공무원의 복무) 연구직----- 지도직-----</p>
<p>제5장 공동연구 등</p>	
<p>제5조(공동연구개발)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연구기관·대학교수·관계전문가 및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연구기관·관계대학·관계전문가 및 농업인등에게 이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기타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농업산·학협동사업의 추진)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산·학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제16조(농업산·학협동사업의 지원) 정부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산·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에서 농촌진흥기관의 농과계 학교·농업단체·연구기관·기업·농업인과 농업산·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20조(공동연구개발)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의 개발과 새로운 기술의 농업현장점목을 위하여 농촌진흥기관·농업관련단체·국내외연구기관·대학·기업·관계전문가 및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수행자----- 연구개발비 또는 출연금----- ③ (현행과 같음)</p> <p>제21조(농업산·학협동사업의 추진) 농촌진흥기관의 장 농촌진흥사업-----</p> <p>제22조(농업산·학협동사업의 지원) -----제21조 ----- -----(삭제)-----</p>

현행	개정안
<p>제14조(연구개발성과의 이전) ①농촌진흥청장은 소속시험연구기관이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 성과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상품화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징수 또는 면제할 수 있다.</p> <p>③농촌진흥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출원하는 경우 특허등록전이라도 당해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등록전까지 이를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p> <p>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사용료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23조(연구개발성과의 이전) ①----- <u>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이 개발하거나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사업의 결과로서 개발한 연구개발성과</u>-----이전 -----기술실시료-----감면-----.</p> <p>②----- ----- ----- ----- ----- ----- -----(삭 제)----- -----.</p> <p>③-----의한 <u>기술실시료</u>----- -----공무원----- -----.</p>
<p>제17조(권한의 위임) 농촌진흥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24조(권한의 위임) ----- ----- -----시·도지사-----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중 “농촌진흥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농촌진흥법 제17조의 규정”으로 한다.</p>